# 소송 등의 판결·결정(2심 판결)

| | |
|---|---|
| 1. 사건의 명칭 |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|
| 2. 원고・신청인 |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・아이스텀앤트러스트(주)・<br>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 |
| 3. 판결・결정내용 | 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<br>2.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,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<br>3. 소송총비용은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 |
| 4. 판결・결정사유 |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,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|
| 5. 관할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6. 판결·결정일자 | 2016년 11월 2일 |
| 7. 확인일자 | 2016년 11월 4일 |
| 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,250,000원 임. |